



1. 신청인		2. 신청일					
3. 신청인 주소		4. 신청인 전화번호					
5. 집회 책임자 이름	6. 집회 책임자 전화번호	7. 집회 책임자 휴대폰 번호					
8. 집회 책임자 이메일 주소							
9. 집회 책임자 주소							
10. 행사 날짜 (월/일/연도)	11.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2. 시작 시간 (준비에 필요한 시간 포함)	13. 종료 시간 (해체 및 적재에 필요한 시간 포함)						
14. 행사의 성격(활동 설명)							
15.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신청 날짜와 신청인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16. 행사 장소							
17. 행사의 참가자는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small>*참가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파트 18 허가서도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small>	18. 예상되는 버스 차량 수						
19. 공개 집회에서 다음의 경찰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 통제	<u>필요한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u> → _____						
인파 통제	<u>필요한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u> → _____						
20. 현장에서는 어떤 장비와 용품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표지판, 플래카드	테이블, 수량: _____	의자, 수량: _____					
단상	조명 장비	배너, 크기: _____	수량: _____				
이동식 사운드 시스템	안내문 배포	기타, 아래에 기입:					
발전기	화장실, 수량: _____						
21. 위의 품목을 제공하는 회사의 회사명과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22. 행사가 끝난 후 귀하의 조직에서 현장을 청소할 예정입니까? 예 아니요	23. 행사에서 전력을 사용해야 합니까? 예 아니요
24. 이 행사를 지원할 자원 봉사자들을 동원할 예정입니까? 예 아니요 예일 경우 인원:	
25. 예일 경우, 자원 봉사자들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모자 - 색상: _____ 뱃지 - 색상: _____ 티셔츠 - 색상: _____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26. 자원 봉사자 코디네이터 이름	27. 자원 봉사자 코디네이터 전화번호
28. 자원 봉사자 코디네이터 주소	
29. 다른 사람이 귀하의 활동을 방해할 합당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p>작성된 양식은 이메일을 통해 OGS.sm.SpecialEvents@ogs.ny.gov 로 전송하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NYS-OGS Convention & Cultural Events, ESP Concourse Room 130, Albany, NY 12242.</p> <p>신청 절차에 관한 조항은 뉴욕주 법령, 규칙 및 규정 제9장 파트 301에 있습니다. 파트 301의 발췌 부분은 본 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제안된 공개 집회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이전에 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	
_____ 집회 책임자의 서명	_____ 날짜
_____ 집회 책임자의 이름 및 직책(정자체로 기입)	
<p>*뉴욕주 법령, 규칙 및 규정 제10장 파트 18에 따라 참가 인원이 5,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모든 공개 행사는 보건부가 발행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신청서에 대한 허가는 보건부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p>	
<p>공중보건, 안전 또는 복지 대책 집회를 희망하는 주 소유지 내 장소의 수용 인원과 관련하여 예정된 참석자가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집회를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집회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관할 커미셔너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자체 비용으로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나 시설에는 보안 조치, 구급처치 시설, 이동식 화장실, 쓰레기통, 폐기물 수거, 청소, 전력 공급, 전기 연결 등이 포함되며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p>	
<p>상거래 업체는 뉴욕주 총무실(NYS Office of General Services)이 별도로 발행하는 허가서 없이 주 소유지에 출입하며 공개 집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p>	
<p>보험: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에 명시된 피보험자 이름은 본 양식의 상자 1에 기재된 신청인과 일치해야 합니다.</p>	

OGS 관할,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주 소유지에서의 공개 집회 허가 신청서 (9 NYCRR 섹션 301.6) 3 / 3 페이지

301.6 주 소유지에서 공개 집회를 열기 위한 신청 절차.

- (a) 주 소유지에서 공개 집회를 하기 위한 요청은 집회일로부터 30일 이상 이전에 커미셔너가 지정한 양식을 통해 신청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허가한 책임자가 서명해야 하며, 신청인 이름, 집회 예정 날짜, 시간, 기간, 성격 및 장소, 해당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상되는 참가 인원, 신청인이 제공하거나 해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커미셔너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시설에 대한 설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무실은 기한 내에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집회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답변할 것입니다. 커미셔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 집회 허가서 발급에 대한 시간 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b) 모든 신청인은 총무실이 면제할 경우를 제외하고 본 파트의 섹션 301.4(d)[섹션 301.4(d)의 아래 조항 참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보험 보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1) 해당 행사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행사이고, (2) 해당 보험이 신청자의 행사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보험 요건의 면제를 요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c) 커미셔너는 신청인이 자비로 특별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한 시설에는 특별 보안 조치, 구급처치 시설, 적절한 이동식 화장실 등이 포함되며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해당하는 모든 주 및 지역 보건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d) 공개 집회는 허가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허가된 방법으로만 개최될 수 있습니다.
- (e) 신청이 거절될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알리며,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커미셔너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입니다. 커미셔너는 최초 결정을 번복하거나, 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커미셔너의 서면 결정서는 행사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24시간 이전까지 제공될 것입니다.
- (f) 공개 집회 신청서를 검토하거나 거절할 때 커미셔너는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간, 날짜, 장소 또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g) 커미셔너는 본 파트의 섹션 301.7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01.7 신청을 거절할 권리.

커미셔너는 주 소유지를 사용함으로써 주 소유 재산의 상태에 해를 끼치거나 악영향을 미치거나, 정상적인 주정부 운영을 제한하거나, 인명이나 재산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주 소유지 사용 신청서를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a) 동일한 시간 및 일반 장소에 대한 이전 허가 신청이 승인되었거나, 승인될 예정이고 해당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이 특정 지역에 대한 중복 점유를 합리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b) 필수 첨부 서류 및 제출물을 포함한 신청서가 완전하게 작성 또는 이행되지 않음
- (c) 신청인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면제를 받지 못함
- (d) 신청서에 중대한 거짓이나 오해 유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 (e) 신청인이 계약 체결, 소송 제기 또는 기소와 관련된 법적 능력을 갖추지 못함
- (f)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대리인이 과거에 주 소유 재산을 훼손하거나 주정부에 채무를 가지고 있음
- (g) 신청인이 과거 4년 이내에 주정부 사용 허가의 중대한 조건 또는 주정부 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함
- (h) 신청인이 원하는 사용 또는 활동이 커미셔너가 후원하는 프로그램과 장소 및 시간적인 면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상충됨
- (i) 신청인이 원하는 사용 또는 활동이 해당 장소에 지정된 목적과 일치하지 않음
- (j) 요청된 장소의 특성상 신청인의 사용 또는 활동에 적합하지 않음
- (k) 신청인의 사용 또는 활동으로 타인이 해당 장소를 이용할 때 불합리하게 방해할 할 것으로 예상됨
- (l) 행사 참가 인원이 해당 장소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함
- (m) 신청인이 원하는 사용 또는 활동을 법률 또는 본 파트가 금지하고 있음

301.8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사용 제한에 대한 권리.

커미셔너는 예기치 않은 운영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권리를 가집니다.

301.9 예약, 취소, 신청서와의 일치.

시설 관리자는 주 시설 사용을 예약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예정된 행사는 승인된 조건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정된 사용, 기한, 물리적인 영역, 커미셔너가 정한 기타 조건 등이 포함되며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사나 활동은 본 파트를 위반하는 것이 되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승인했다고 해서 주정부가 해당 행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커미셔너는 신청인에게 자료나 발행물에 적절한 고지문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주 소유지에서 발생한 개인 소유물의 손상이나 개인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본 조항은 주 재정법 제8항(12-a)에 따라 커미셔너가 재산상 손해 또는 개인 부상에 대한 청구를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301.4(d) 보험.

보험 요건은 여기에 명시된 주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체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부터 뉴욕주 및 총무실을 면책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무실은 뉴욕주 주민과 책임자, 대리인 및 직원을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사고당 \$1,000,000, 총 \$2,000,000 이상의 보상 한도를 가진 상업용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를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하고 커미셔너가 수락하는 형식의 보험증서를 행사 시작 전에 커미셔너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커미셔너의 사전 승인 하에 자체 보험에 가입한 주정부 기관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 보장이 확보된다면 대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서에 명시된 피보험자 이름은 본 양식의 상자 1에 기재된 신청인과 일치해야 합니다.